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이원형 의원 외 16명

나. 의안번호 : 제2711호

다. 제출일자 : 2025. 5. 23.

라. 회부일자 : 2025. 5. 29.

2. 제안사유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보험 청구를 통한 피해구제가 가능함을 명시하여,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권리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시민의 피해 복구와 관련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함(안 제3조제2항)

나.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 피해에 대해 지원받을 권리를 추가함(안 제4조제2항)

다. 대중교통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안전법」,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6. 3. ~ 2025. 6. 7.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계기관 의견¹⁾

○ 제출의견 : 수정

▶ (안 제4조제2항 시민의 권리)

- 본 개정안의 취지는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시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을 통한 피해구제가 가능함을 명시하는 것임
- 안 제4조제2항의 “모든 시민이 교통사고 피해 등에 대한

1) 교통정책과-9003호('25.6.9.)

지원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은, 본 개정안의 취지이자 실질적 조항인 안 제4조의2의 범위를 넘어서서 시민안전 보험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모든 시민의 모든 교통사고 피해를 지원해야 하는 문구로 해석될 가능성이 농후함

- 즉, 안 제4조제2항의 ‘지원’이 매우 모호하며, 안 제4조제2항과 안 제4조의2가 서로 배치됨

⇒ 이에, ① 실질적 조항인 안 제4조의2를 그대로 두고, 안 제4조제2항을 삭제하거나 ② 안 제4조의2를 “모든 시민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대중교통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후유장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로 수정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조, 안 제4조의2) 이견 없음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이하 ‘대중교통 사고’라고 함)로 시민 피해발생시 이에 대해 지원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피해지원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명문화하는 한편 상해·사망·후유장애 등에 대해 관련 조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의무 관련(안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 동 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은 시장이 대중교통사고로 인한 시민피해 회복을 위해 지원하는 책무를 규정하고, 제4조제2항은 해당 피해에 대해 시민이 지원받을 권리를 명문화하는 것임
- 현재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4조²⁾에 따라 한국지방행정공제회와 ‘시민안전보험’ 계약을 체결

2)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4조(보험계약 등)

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며, 보험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결·운영함으로써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음(세부보장내용은 별첨 참고)

※ 시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서울시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포함)
- 계약기간 : '25.1.1~'25.12.31.
- 보 험 료 : 2,040백만원
- 운영업체 : 한국지방행정공제회
- 보장내용 : 재난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보험금 및 부상치료비 등

- 특히 대중교통 탑승중, 승·하차중, 승강장 내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시민은 시민안전보험 보장을 통해 피해 지원을 받고 있으며, '24년 한해 74건(사망 3, 장애 71)의 대중교통 사고가 보장받음

※ 시민안전보험 보장현황

('25. 4월말, 단위 : 건, 백만원)

연 도	지급률 (%)	보험료	합 계		화재·폭발		대중교통		스쿨존	실버존	자연재해		사회재난		의사상자
			지급액	건수	사망	장해	사망	장해	상 해	상 해	사망	장해	사망	장해	보상금
'25	25.8	2,040	527	54	11	1	3	24	6	1	1	-	7	-	-
'24	55.8	2,095	1,170	151	25	9	3	71	25	2	2	-	11	-	3
'23	38.4	2,105	808	103	19	8	5	52	14	-	3	-	2		-
'22	41.3	1,553	641	79	28	8	-	42	-	-	1				
'21	44.4	868	385	75	30	9	-	32	2		2				
'20	40.6	867	352	44	27	1	1	12	1		2				
합 계	-	9,528	3,883	506	140	36	12	233	48	3	11	-	20	-	3

-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 현실을 반영하고 있고, 대중교통사고로 인한 시민피해 회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대중교통사고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를 명문화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어 보임

■ 대중교통 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 관련(안 제4조의2)

- 동 개정조례안 제4조의2는 시민이 대중교통 사고로 상해·사망·후유장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임
- 현재 보험기관과 체결한 시민안전보험의 약관³⁾에 따르면 승객이 대중교통 이용중에 발생한 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개정조례안 제4조의2는 대중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후유장애’에 대해 관련조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상해 부상도 보장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조례안의 명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3)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애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중에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

참고로 24개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고 이 중 종로구 등 7개 자치구⁴⁾는 보험을 통해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에 대해 최대 30~100만원까지 보장하고 있음

4) 대중교통 관련 자치구 구민안전보험 현황

대상자치구	보장항목	보장금액
종로, 용산, 성북, 강서, 동작, 강남, 강동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상해급별 최대 30~100만원

[별첨] '25년 시민안전보험 세부보장내용

(市 내부자료)

구 분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자연재해 사망	서울특별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자연재해 후유장해	서울특별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사망	서울특별시민이 재난안전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2,000만원
사회재난 후유장해	서울특별시민이 사회재난으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서울특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서울특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서울특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서울특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서울특별시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부상등급 1~14급)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서울특별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부상등급 1~14급)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서울특별시민이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000만원 한도